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3일 23시 49분



목차

목차	2
건설기계등록	3
기본사항	3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	3
민원관련 참고사항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신규등록 ▪ 이전/변경등록 ▪ 말소등록 ▪ **저당권설정등록** ▪ 저당권말소등록 ▪ 등록번호표재발급
- 등록증재교부 ▪ 등록원부발급

기본사항

-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해야 함.
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

- 저당설정신청서
- 저당권설정 계약서 2부
- 건설기계소유자(근저당설정권자) 인감증명서 1통
- 채무자 인감증명서 1통 (건설기계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)
-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
민원관련 참고사항

- 저당권설정액의 0.4% 수입증지
- 저당권설정액의 0.2% 등록면허세

Yeosu Web Contents

